

##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조성용\*\*

### 국 | 문 | 요 | 약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시설 내 직원이 과제수행이나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때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을 방지 및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 거부사유 및 개인정보의 보존기간과 관련해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는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주제어 :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 영역특수적 법적 근거, 목적구속, 민감정보,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

\* 이 논문은 2013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지난 2011년 3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모든 분야,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sup>1)</sup>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6조). 일반법이므로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지만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을 폐지하지 않고 병존시키기로 한 것이다.<sup>2)</sup>

이에 따라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과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특정 영역에 몇 개만 산재할 뿐이다. 예컨대 사진촬영(제19조 제1항), 접견 감시(제41조 제2항), 서신수수의 검열(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전화통화의 청취·녹음(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인식업무조치(제93조 제1항),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제94조 제1항) 및 정보공개청구(제117조의 2)가 그러하다. 특히 동법 제117조 2 제1항에 의하면 수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한, 형집행법상의 개별 법규정과 정보공개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연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있다. 형집행 분야에서 처리되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전형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거기에는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외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은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 1) ‘처리’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41면. 형식적으로는 개별법의 존치 이유가 분야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처의 기록권을 보호하고자 한 목적이 크다고 보는 견해로는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68면.

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법은 개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개 분야별로 특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시에 제정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법이 일반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개개 분야에 구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up>3)</sup>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형집행법의 요청(특수성)에 맞게 수정하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6월 19일 노회찬 의원을 대표로 하여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었는데, 거기 제7장에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표제하에 5개의 법조항이 제시되었다.<sup>4)</sup>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제대로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집행법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자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이고 각 주마다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98년 행형법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bereichsspezifische Rechtsgrundlagen)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규정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달리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형집행법에 마련되어야 할 정보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

3) 김일환, 개인정보 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2집, 2011/2, 275면; 이민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법령 정비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실태와 입법과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12/6, 12면.

4)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발의), 의안번호 6902, 발의연월일(2007, 6, 19).

용을 살펴보고, 그 법정책적 의의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독일 형행 법상 정보보호 규정이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

### 1. 제정배경

1977년에 제정된 행형법은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행형에서 정보보호는 주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1983년 연방 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이 헌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sup>5)</sup> 그 판결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오로지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감수될 수 있으며, 입법자는 개별적으로 제한의 전제조건 및 범위를 개인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sup>6)</sup> 그리하여 이제부터 입법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입법 경과조치를 이유로 이 판결이 내려진지 14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1998년까지 행형에서 정보보호를 주도한 것은 판례의 몫이었다. 그러나 행형의 일상에서 정보보호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 감옥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형자도 매우 민감한 세부사항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수형자의 관심은 정보적 자기결정권보다는 집행의 완화, 처우문제와 징계처분의 정지 등에 쏠려 있었다. 1998년까지 형집행재판부(Strafvollstreckungskammer)에 계류된 사건에서 정보보호가 중심이 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sup>7)</sup> 마찬가지로 문헌

5) BVerfGE 65, S. 1ff.

6) BVerfGE 65,

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미루고 있던 연방정부는 마침내 1998년 3월 제4차 행형법 개정법초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영역특수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형법을 보충하고 동시에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제5장에 “정보보호”라는 새로운 표제 하에 9개의 규정(제179조 내지 제187조)이 신설되었다.

## 2. 주요내용

### 가. 개관

제5장의 구조는 일반법인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영역특수적 규정이 관건이다. 이러한 규정은 인구조사판결의 기준에 따라 수형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행형법상의 과제(동법 제2조)를 고려하여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자유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그 밖의 영역(보안감호, 보안구금, 강제구금, 교육구금, 추방구금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sup>7)</sup>

구체적으로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집행기관의 정보수집(제179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제180조), 목적구속(제181조), 민감한 정보의 보호(제182조), 기록과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제183조),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제184조),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5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6조),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제187조)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정보수집(제179조)

동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형집행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7) 자세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Kamann, Datenschutz im Strafvollzug - Verfassungsgebot und Wirklichkeit, ZfStrVo 2000, S. 84.

8) Calliess/Müller-Dietz, Strafvollzugsgesetz, 8. Aufl., 2000, S. 761.

형집행기관은 행형법이 과제로 부여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집행의 목적(행형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형집행기관은 사안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용절차(제5조)에서 인적 사항의 확인, 처우조사(제6조)와 집행정회의 수립(제7조)에서 시작하여 수형자의 처우 및 집행의 형성을 거쳐 석방에 이르기까지 형집행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sup>9)</sup> 예컨대 형집행기관은 시설내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외부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2항 1문은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주체(수형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온 기본원칙이다. 즉, 관련 정보주체는 누가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알아야 한다.<sup>10)</sup> 그러나 형집행의 과제라는 특성상 특정한 사안에서는 관련 정보주체의 협력 없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아닌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동항 2문은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sup>11)</sup> 관련 정보주체 자신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라는 원칙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컨대 정보가 수형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그러하다.<sup>12)</sup> 나아가 수집목적 및 법적 근거를 알려주어야 할 통상적인 의무는 형집행의 영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동항 2문은 이에 대한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수형자 아닌 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그의 협력 없이 형집행기관 밖에 있는 자에게서 수집되는 사례를 상정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처우, 시설의 안전 또는 자유형의 집행의 안

9)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Vier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vollzugsgesetzes, Drucksache 13/10245, S. 18;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64면 이하.

10) BVerfGE 65, 42ff.

11) 법규정이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임무와 업무목적상 관련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을 필요로 하거나 관련 정보주체에게서 수집하면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게 되거나 관련 정보주체의 보호할 만한 우월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가 그러하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항).

12)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19면.

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수집의 유형이 관련 정보주체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형자 아닌 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컨대 수형자가 진술한 휴가지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형집행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형집행기관이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와 접촉하려는 자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하다.<sup>13)</sup>

제4항 1문은 개인정보가 관련 정보주체의 인식 없이(비밀리) 수집된 사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정보수집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한(예컨대 도주의 계획이나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계획을 비밀리 입수한 경우는 예외), 관련 정보주체에게 그것에 대해 고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관련 정보주체가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정보제공요구권과 기록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14)</sup> 2문은 관련 정보주체 이외의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즉, 법규정이나 그 본질로 볼 때 특히 제3자의 우월한 정당한 이익으로 인하여 비밀로 해야 하거나 고지의 비용이 보호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관련 정보주체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 다. 처리와 이용(제180조)

동조 제1항은 형집행기관은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자유형의 집행목적)과 개인정보의 수집의 전제조건이 일치한다.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1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sup>15)</sup>

제3항은 제1항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유형의 집행목적에서 이탈된 목적

13)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69면.

14)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19면.

15)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19면.

이라고도 볼 수 없어서 제1항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 및 사용은 관련 정보주체의 보호할 만한 우월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사법적 권리구제에 기여하거나(행형법 제109조 이하) 상부기관의 감독 및 통제권한의 행사에 기여하거나 형집행기관에 대한 교육 및 시험목적에 기여할 때에는(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제3항) 허용된다.

제2항과 제4항은 제1항의 목적에서 이탈된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형집행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적용사례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더 높은 가치의 법익(국가의 존립과 안전,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 타인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 내지 3호),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방지 또는 형사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호) 그리고 형집행적 조치 또는 형집행법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호)가 거기에 해당된다.

제4항 1문은 형집행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의 형태를 1호에서 8호까지<sup>16)</sup>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2문은 다른 법규정이 거기에서 명확하게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실무적인 이유에서 이와 같은 일반조항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안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완결된 형태의 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17)</sup>

제5항 1문은 형집행기관이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 대하여 수형자의 구금 여부와 예상되는 석방시기를 알릴 수 있는 전제조건과 그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 수령자라면 정보가 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1호). 그에 반해 비공공기관이라면 정보 수령자는 그러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소명해야 하고, 수형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해 반대할 만한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2호). 2문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에게도 그로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수형자의 석방주소 또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16) 법원부조, 소년법원부조,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호), 사면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호), 사법통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의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호), 수형자의 친족에 대한 부조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호), 병무청의 직무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호), 외국법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호), 세금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호)가 거기에 해당된다.

17)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78면.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말이다. 수형자는 그러한 정보제공에 앞서 聽聞(Anhörung)의 기회를 갖는다. 다만 그를 통하여 신청자의 이익추구가 무산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이익이 수형자의 사전 청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형집행기관은 수형자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한다(3문).

제6항 1문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Akten)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집행기관, 예컨대 형사법원, 형집행재판부 및 형사소추기관 등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이는 이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up>18)</sup> 하나는 원본 증거물인 기록이 형집행기관의 영역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원본 증거물을 넘겨주면 재생불가능한 증거물이 멸실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넘겨줄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이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기록열람을 신청한 기관이 정보제공만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을 양도할 수 있다(2문).

제7항은 1문은 형집행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제18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록에 들어 있는 다른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제3자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비밀유지의 이익이 현저하게 우월하지 않는 한, 제18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수령자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2문). 이는 정보 수령자는 초과된 개인정보를 단지 보관할 뿐이고 계속 처리 및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sup>19)</sup>

제8항은 형집행기관이 접견, 서신수수, 소포 또는 전화 및 전신의 감시를 통하여

18)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1면 이하;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79면.

19)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80면.

알게 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부세계와의 교류에 대한 특별한 신뢰와 보호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보는 오로지 제180조 제2항에 열거된 목적, 제109조 이하에 의한 사법적 권리구제의 목적,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 또는 수형자의 청문 후 처우의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 및 이용될 수 있다. 형집행기관이 감시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우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형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수형자도 스스로 납득하고 처우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0)</sup>

제9항은 제179조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수형자 아닌 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목적구속에서만 허용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보는 제179조 제3항의 목적 이외에 제180조 제2항 1호 내지 3호에 열거된 목적 또는 현저한 의미를 지닌 범죄행위의 방지나 소추를 위해서만 처리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제10항은 제182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제한이나 특별한 법적 사용규칙에 반하는 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제11항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전제조건 및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해야 한다(1문). 정보제공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2문). 이러한 경우 형집행기관은 정보제공의 요청이 공공기관의 과제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보제공에 관한 제8항 내지 제10항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3문).

## 라. 목적구속(제181조)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자에게도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수령자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었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용

20)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2면;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80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다수의 정보제공을 회피할 수 있다. 정보 수령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비공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 이때 형집행기관은 비공공기관인 정보 수령자에게 목적구속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비공공기관(사인)은 대개 정보보호법적인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sup>21)</sup>

#### 마. 민감한 정보의 보호(제182조)

동조 제1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수형자의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신조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속하는데, 이를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형자에 관한 다른 개인정보는 시설 내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82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항 1문은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교육자(형법 제203조 제1항 1호, 2호 및 5호에 열거된 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시설 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치료 전문가에게 수형자가 비밀로 털어 놓은 개인정보 또는 수형자에 관한 그 밖의 개인정보는 형집행기관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문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더 높은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치료 전문가는 형집행기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3문은 의사의 특별한 지위와 그의 과제영역을 고려하여 의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영역(제56조 내지 제66조)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고, 단지 특정한 전제조건 하에서<sup>22)</sup> 소장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21)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3면.

22) 형집행기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있다. 따라서 의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영역이 아니라 집행적 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예컨대 치우조사나 집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경우) 좁은 의미의 건강검진에 속하지 않는 치료적 대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2문에 따라 소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sup>23)</sup>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2문과 3문에 따라 발생하는 공개권한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은 소장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그러한 개인정보는 오로지 공개의 목적이나 공개가 허용되었을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의사가 다른 수형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수형자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정보를 소장에게 공개하였다면, 소장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공개의 목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집행적 결정(예컨대 수형자의 휴가신청이나 시설 외 작업투입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공개가 허용되었을 목적)을 위해서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sup>24)</sup>

제4항은 수형자의 진찰이나 치료를 위임 받은 시설 외 의사나 심리학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위임 받은 시설 외 의사나 심리학자는 소장뿐만 아니라 시설 내 의사나 심리학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수형자에 대한 일관된 진찰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전문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sup>25)</sup>

## 바. 기록과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제183조)

동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시설 내에서도 무한정 그리고 자의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시설 내 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제2항 1문은 시설 내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과 파일을 필

23)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5면;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90면.

24)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6면.

25)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6면;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92면.

요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이나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2문은 건강기록과 병원임상기록을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심리학자나 다른 치료 전문가가 작성한 치료기록이나 평가기록(병력과 테스트 포함)은 일반적인 수형자신상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sup>26)</sup>

#### 사.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제184조)

동조 제1항은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영역특수적 규정으로서 이러한 정보는 늦어도 수형자의 석방이나 다른 시설로의 이송 후 2년 내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입소 및 출소일자에 관한 정보는 수형자의 석방이나 이송 후 수형자신상기록을 찾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항 1문은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영역특수적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의하면 수형자의 석방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sup>27)</sup> 거기에 대한 예외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이 개별적으로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sup>28)</sup>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러한 제공 및 이용제한은 수형자가 새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거나 관련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제된다(2문).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의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수형자신상기록, 건강기록 그리고 병력기록은 20년, 수형자 장부는 3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2항 1

26)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795면.

27)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와는 달리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록의 증명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는 대개 수많은 서류와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는 상황이 거기에 반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완전성의 원칙은 기록은 현재의 정보상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제184조 제2항은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대신에 제공 및 이용금지를 규정하였다.

28) 범죄의 소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1호), 제186조에 의해 학문적 연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호), 현존하는 증명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호),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적 청구권의 확인, 관철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호)가 그것이다.

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보관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제4항은 형집행기관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 관련 정보 주체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 수령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5항은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그리고 처리정지에 대해서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하고 있다.

#### 아.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5조)

제185조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sup>29)</sup>을 고려하여 행형의 영역에서 최초로 관련 정보주체, 즉 수형자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전제 조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형자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을 하였다.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의 대상이 연방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보호기관, 연방정보원 및 기무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된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3항). 또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sup>30)</sup>에는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그리

29) 거기에 의하면 시민은 누가 언제 그리고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기회에 수집하고 저장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그는 그러한 행위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으로 심사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BVerfGE 65, 42ff.

30) 정보제공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적합한 과제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1호), 정보제공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연방과 주의 공공복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2호), 비밀유지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밀유지에 대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3호)가 그것이다.

고 법적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거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태롭게 된다면, 거부  
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5항). 이러한 경우 관련 정보주체는 형집  
행기관에 대하여 연방 개인정보보호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거  
나 그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은 무상이다(동조 제7항).

#### 자.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6조)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기록에 있는 개인 정보는 이것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1호), 익명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2호), 연구작업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정보제공의 배제에 대한 관련 정보주  
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3호)에는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다른 기관  
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로써 입법자는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학문 및 연구의 자유  
사이의 이익교량을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토대로 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31)</sup>

제2항은 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 정보의 제공이 연구작업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선적으로 심  
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제공만으로 연구작업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  
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열람도 허용될 수 있다.

제3항은 개인 정보는 공직자나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히 의무를 지고 있는 자  
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공된 개인 정보에 대한 엄격한 목적구속을 규정하고 있다. 제공된 정  
보는 제공되었던 연구작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연구작업을 위  
한 개인 정보의 이용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제조건 하에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

제5항 1문은 개인 정보는 권한 없는 제3자의 인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만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31) Calliess/Müller-Dietz, 앞의 책, 809면.

있다.<sup>32)</sup> 게다가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이용이 장소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다른 행정과제나 사무목적과 분리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문).

제6항은 연구목적이 허용하는 한, 개인정보는 익명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 가능하지 않다면, 인적 또는 물적 관계에 관한 개별적인 언명이 특정한 또는 특정가능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표지(예컨대 인적 사항)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연구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제조건 하에 개인정보의 공표를 허용하고 있다. 즉, 이것이 시대사의 사건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며,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도 연구목적에 위한 개인정보의 공표는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한다.

제8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령자가 비공공기관인 경우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라 감독기관은 개별사례에서 정보보호 법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통제 의무는 규정위반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파일의 형태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 차.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제187조)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제2조), 그 밖의 개념규정(제3조),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과 동의형식(제4a조 제1항과 제2항), 비밀준수의무(제5조), 관련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제6조 제1항)<sup>33)</sup> 그리고 연방행정에서 정보보호의 실행(제18조 제2항)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규정을 적용한다.

## 3. 평가

입법자가 제5장에서 과연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법규정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행집행

32)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앞의 자료, 29면.

33)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제공요구권(제19조 및 제34조), 정정권, 삭제권 및 처리정지권(제20조 및 제35조)은 법률행위를 통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형집행 실무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한 제182조 제2항이 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헌법적 요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형에서 정보보호 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불확정 법개념과 예외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보수집은 제179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의 과제(제2조)가 이를 요구하는 한 허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수집의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수집이 형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형집행기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sup>34)</sup> 이러한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이 비록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또한 예외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외가 오히려 원칙이 되며, 이는 곧바로 무한정의 정보수집 및 처리로 이어진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하고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이다. 이때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공개의무가 있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긴급피난의 일환으로서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불확정 법개념의 속성상 넓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현저성’이나 ‘필요성’의 요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음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소 넓은 법률의 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sup>35)</sup>에서부터 합헌적 제한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sup>36)</sup>을 거쳐 위헌이라고 비

34) Kamann, 주7의 논문, 85면.

35) Wulf, Innerbehördliche Offenbarungs- und Schweigepflichten psychotherapeutischer Fachkräfte im Strafvollzug, Recht & Psychiatrie 1998, S. 185ff.

36) Preusker/Rosemeier, Umfang und Grenze der Schweigepflicht von Psychotherapeuten im Justizvollzug nach dem 4.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vollzugsgesetzes, ZfStrVo 1998, S.

관하는 입장<sup>37)</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합헌적 제한해석을 주장하는 Schöch의 제안은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다. 그에 의하면 개별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의 목적(재사회화 및 범죄방지)을 구체화하고 있는 집행계획이야말로 형집행의 과제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 해석상, 수형자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저성’과 ‘필요성’의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집행의 과제수행은 개별 수형자에 대한 집행계획에 비추어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sup>38)</sup> 이제 그가 제시한 제한해석은 제182조 제2항을 넘어 제179조 이하의 그 밖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 III.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과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

#### 1. 일반론

위에서 살펴본 독일 행형법상의 정보보호 규정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관련 법규

323ff; Schöch, Zur Offenbarungspflicht der Therapeuten im Justizvollzug gemäß §182 II StrVollzG, ZfStrVo 1999, S. 259ff.

- 37) Adt, Schweigepflicht und die Entbindung von der Schweigepflicht, ZfStrVo 1998, S. 328ff; Hartmann, Zu den Rahmenbedingungen von Psychotherapie mit (Sexual-)Straftätern im Regelstrafvollzug: auch eine Replik auf R. Wulf, in R&P 1998, Recht & Psychiatrie 1999, S. 70ff.

- 38) 적용례: 사회복지사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여러 차례 외출과 주말휴가를 다녀온 어느 수형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새 남자를 만나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수형자는 다음 번 휴가 때 부인을 만나 설득하여 이혼을 만류하려고 하지만, 부인은 사회복지사가 마련해 준 대화의 장소(접견실)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나 도주를 시도할 위험성이 현저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Kaiser/Schöch, Strafvollzug, 5. Aufl., 2003, S. 216, 217ff.

- 39) 예컨대 제179조 제1항(“이 법률에 따라 형집행기관에게 부여된 자유형의 집행”) 및 제3항(“수형자의 처우”)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은 형집행의 목적(제2조)과 집행계획(제7조)의 기준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 형집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규정(제19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17조의 2),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주된 비교대상이다.

비교의 거점은 독일 행정법상의 정보보호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형집행법에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이 독일 행정법상의 정보보호 규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권한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이다. 형집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규정(제19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공공기관은 형집행기관을,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란 형집행법 제1조에 규정된 형집행의 목적(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동법 제20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특정한 경우<sup>40)</sup>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권한 규정에 관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독일 행형법 제179조 제1항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독일 행형법 제17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

40)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 정보주체 자신인지 정보주체 이외의 자나 기관인지에 따라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형자에 관한 것인지 수형자 아닌 자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정보수집이 정보주체의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정보수집의 정당화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sup>41)</sup>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차이가 있다. 형집행의 특성상 정보수집의 유형과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 형행법 제17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영역특수적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요구를 전제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형행법 제179조 제2항과 제4항에서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주체의 협력 없이 수집되거나 그의 인식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요구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으면 고지의무도 없다고 해석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입법론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고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sup>42)</sup>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의 규정(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17조

41) 독일 형행법상의 정보보호 규정의 체계화에 대해서는 Laubenthal, Strafvollzug, 5. Aufl., 2010, S. 563ff.

42) 같은 취지로는 이창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2호, KISA, 2012/6, 83면. 당초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에서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8조 제2항은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특정한 사례의 경우<sup>43)</sup>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이 요청되는 경우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58조 제1항 2호 및 3호)<sup>44)</sup>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은 원칙적으로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과 독일 행정법 제180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예외규정도 거의 유사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43)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4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호)가 그것이다.

44) 동법 제58조는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내지 제7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개인정보는 동법의 핵심규율사항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8장(보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문 제3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는 정혜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422면; 윤영철,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2호, 2012/8, 149면 이하.

제2항 5호의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다. 독일 행형법 제180조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처럼 행집행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적용사례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의 형태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독일 행형법 제180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으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제6항), 접견·서신수수·소포 또는 전화 및 전신의 감시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제8항), 수형자 아닌 자에 관한 개인정보(제9항)의 처리 및 이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행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눈여겨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19조가 독일 행형법 제180조 제11항보다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더 철저한 규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는 행집행기관이나 정보제공을 위탁한 공공기관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행집행기관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의무 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목적구속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행집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항) 행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수령자에게도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9조와 독일 행형법 제181조는 차이가 없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정보 수령자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었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수령자가 형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비공공기관에게 재차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형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요할 뿐만 아니라 행집행기관은 비공공기관에게 목적구속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전자는 다수의 정보제공의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 5. 민감한 정보의 보호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거기에 의하면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sup>45)</sup>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설 내 치료 전문가의 소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행형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에서 민감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다. 그러나 형집행법에는 민감한 정보의 수집 및

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의 ‘유전정보’ 및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22조).

이용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규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sup>46)</sup> 이는 곧 제23조는 행형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감한 정보의 경우 시설 내 일반적 공표를 금지하는 독일 행형법 제182조 제1항은 참고할 만하다.

나아가 형집행법은 특별한 전문직 종사자(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자, 종교인 등)가 집행적 결정과정이나 조치에 관여하게 되는 수많은 규정<sup>47)</sup>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수형자에게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제23조)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는 이를 시설 외부는 물론이고 소장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일 부분 또는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소장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집행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치료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어야 할 비밀유지의무와 형집행의 과제수행에 기여하는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sup>48)</sup> 전문직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독일의 입법자는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시설 외부는 물론 시설 내부(소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전제조건 하에서는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형집행의 과제를 서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46) 예컨대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알게 된 수형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30조 내지 제40조), 종교행사나 종교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수형자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제45조), 외부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수형자의 세계관, 정치적 견해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제58조) 등이 대표적이다.

47) 가령 수용의 거절(제18조), 건강검진(제34조), 부상자 치료(제36조), 외부의료시설 진료(제37조), 자비치료(제38조), 진료환경(제39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제40조), 종교행사(제45조), 입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제52조), 외부전문가의 상담(제58조), 분류심사(제59조), 교육(제63조), 사형확정자의 개인상담(제90조), 보호실 수용(제95조), 징벌의 집행(제112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8) Calliess/Müller-Dietz, 주8의 책, 788면.



우리나라 형집행 실무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가 소장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아니면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49)</sup> 어떠한 관행이 지배해 왔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도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6. 기록과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시설 내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설 내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인식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시설 내부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하여 형집행법에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할 권한이 있는 직원의 범주와 그의 제공권한을 형집행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내 직원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과 파일을 필요한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형집행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집행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특별히 민감한 정보인 건강기록과 병원입상기록의 경우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9)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집행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소장은 행형 전체를 책임지는 자로서 유사시 조직의 위험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를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 7.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형집행기관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집행기관은 전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나아가 정보주체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기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sup>50)</sup>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2항).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에 관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과 독일 행형법 제184조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대상인 개인정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삭제를, 후자에 대해서는 삭제 대신에 제공 및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분이 없는 우리나라의

50)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4호)가 그것이다.

경우와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은 디지털로 한정되지 않고 아날로그까지 확대된다. 그리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이외에도 수기문서나 서류철도 거기에 포함된다.<sup>51)</sup> 그에 반하여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은 파일(Datei)<sup>52)</sup>과 기록(Akte)<sup>53)</sup>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기록의 완전성(Vollständigkeit)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일과 기록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록은 그때마다 실제적인 정보상태를 넘어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도 증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파일과는 달리) 대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수의 서류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 대신에 제공이나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 내지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곧바로 행형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동조가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가 어떠한 경우인지 형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1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행형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강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보존기간이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51)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133면;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제36권, 2012/6, 99면; 윤영철, 주44의 논문, 110면.

52) 파일이란 1. 특정한 표지에 따라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평가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모음(자동화된 파일) 그리고 2.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특정한 표지에 따라 정리, 변형 그리고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그 밖의 개인정보의 모음(비자동화된 파일)이다. 기록과 기록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것이 자동화된 절차에 따라 변형 그리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외가 인정된다(제1항).

53) 기록이란 제1항의 파일개념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공무상 또는 업무상 목적에 기여하는 증거물이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가 거기에 해당한다(제2항).

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10년 이상 된 진료기록이라도 환자의 진단이나 진료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예컨대 특정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10년 후에 내원한다거나 암환자가 10년 후 재발한 경우)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에도 무조건 파기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점에서 수형자신상기록, 건강기록 그리고 병력기록에 관한 한, 제2항 1문에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3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은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해야 하는데 반하여,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5항(준용규정)에 의하면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 이외에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전제조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여야 한다.<sup>55)</sup> 만약 형집행기관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주체는 거기에 대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 이하). 정보주체의 정정권, 삭제권 및 처리정지권은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정보보호의 핵심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집행기관이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 및 기록열람을 희망한다면,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54) 김재광, 앞의 논문, 107면.

55) Arloth, Strafvollzugsgesetz, 2. Aufl., 2008, S. 756; Calliess/Müller-Dietz, 주8의 책, 801면.

우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소장은 그 수형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형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제3항).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다수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행형과 관계되는 정보는 1호 내지 제4호<sup>56)</sup>이다.

그 다음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소장은 수형자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형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소장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4항).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열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기록열람은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차이점이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 기록열람은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제한(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 없이도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56)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1호), 국가안 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호)가 그것이다.

독일 행정법 제185조가 수형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록열람의 요구로 인하여 형집행기관이 전체적인 정보상황을 매번 심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형집행기관의 이익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57)</sup> 그러나 수형자의 기록열람권은 법률행위에 의해서도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핵심권리일 뿐만 아니라,<sup>58)</sup> 효율적인 권리구제 및 형집행 목적에 기여하는 처우형성에 있어서 수형자의 공동참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sup>59)</sup> 기록열람의 요구 자체가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수형자는 그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열람을 요구하는지 소명할 필요가 없다. 형집행기관은 예외적으로 열람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의 소명 없이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이 독일 행정법 제185조보다 더 올바른 입법태도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 거부사유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요구는 제3자의 정보가 관련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sup>60)</sup> 즉, 정보제공은 원래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전체가 기록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 기록열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부수적인 문장으로 또는 간략하게 손으로 쓴 표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 요구에 대하여 곧바로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sup>61)</sup> 그리하여 이러한 거부사유 가운데 공통적인 것만을 추려

57)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주9의 자료, 28면.

58)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의미에서 관련 정보주체의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은 “정보보호의 Magna Carter”라고도 일컬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Weichert, Akteneinsicht im Strafvollzug, ZfStrVo 2000, S. 88.

59) Seebode, Einsicht in Personalakten Strafgefangener, NJW 1997, S. 1755; Weichert, 앞의 논문, 89면.

60) Weichert, 앞의 논문, 88면.

61) 아마도 이러한 입법방식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특별법인 다수의 개별법(정보공개법,

서<sup>62)</sup>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형집행기관은 수수료와 우송료를 통하여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견제 내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수수료와 우송료는 열람 등의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어 악용의 위험성이 높다.<sup>63)</sup> 게다가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을 요구하는 주체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수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마음껏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료와 우송료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4호에 근거하여 형집행기관은 수형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익명화) 제공하는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창범, 주2의 책, 70면 이하; 윤영철, 주44의 논문, 117면 이하.

62) 형집행의 과제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유지에 대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가 그것이다.

63) 이창범, 주42의 논문, 82면.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sup>64)</sup>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sup>65)</sup>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일 행형법 제186조 제1항과 같이 일단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형집행기관에게 심사의무를 부과하거나(제2항), 개인정보를 공직자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제공하거나(제3항),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목적구속을 요구하거나(제4항), 개인정보의 이용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제5항)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64) 이것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연구작업에 대한 공적 이익이 전담의 배제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가 그것이다(독일 행형법 제186조 제1항).
- 65) 같은 취지로는 이창범, 앞의 논문, 90면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제2조 1호)의 개념요소로서 ‘식별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60집, 2013/2, 352면 이하.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시설 내 직원이 과제수행이나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때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을 방지 및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 거부사유 및 개인정보의 보존기간과 관련해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는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행자에게 부담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일환, 개인정보 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2집, 2011
- 김재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제36권, 2012
- 윤영철,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2호, 2012
- 이민영,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법령 정비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실태와 입법과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 이창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2호, KISA, 2012
-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 임규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60집, 2013
- 정혜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 Adt, Schweigepflicht und die Entbindung von der Schweigepflicht, ZfStrVo 1998
- Calliess/Müller-Dietz, Strafvollzugsgesetz, 8. Aufl., 2000
-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Vier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vollzugsgesetzes, Drucksache 13/10245
- Hartmann, Zu den Rahmenbedingungen von Psychotherapie mit (Sexual-)Straftätern im Regelstrafvollzug: auch eine Replik auf R. Wulf, in R&P 1998, Recht & Psychiatrie 1999
- Kaiser/Schöch, Strafvollzug, 5. Aufl., 2003
- Kamann, Datenschutz im Strafvollzug - Verfassungsgebot und Wirklichkeit, ZfStrVo 2000
- Laubenthal, Strafvollzug, 5. Aufl., 2010

Preusker/Rosemeier, Umfang und Grenze der Schweigepflicht von Psychotherapeuten  
im Justizvollzug nach dem 4.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vollzugsgesetzes,  
ZfStrVo 1998

Schöch, Zur Offenbarungspflicht der Therapeuten im Justizvollzug gemäß §182  
IIStrVollzG, ZfStrVo 1999

Seebode, Einsicht in Personalakten Strafgefangener, NJW 1997

Weichert, Akteneinsicht im Strafvollzug, ZfStrVo 2000

Wulf, Innerbehördliche Offenbarungs- und Schweigepflichten psychotherapeutischer  
Fachkräfte im Strafvollzug, Recht & Psychiatrie 1998

## Rechtliche Normierung des Datenschutzes im deutschen Strafvollzug und ihre praktische Bedeutung

Cho, Sung-Yong\*

Im Mittelpunkt des 4. StrVollzGÄndG vom 26.8.1998 standen die neuen Regelungen zum Datenschutz in den §§179-187. Es handelt sich um die nach dem Urteil des BVerfG vom 15.12.1983 erforderlichen bereichsspezifischen Regelungen für die 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Sie schränken das vom BVerfG aus Art. 2 Abs. I i.V.m. Art. 1 Abs. I GG abgeleitete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Vollzugsaufgaben gemäß §2 StrVollzG in verfassungskonformer Weise ein.

Die neuen Datenschutzregelungen umfassen einem dringenden Bedürfnis der Praxis entsprechend nicht nur die zentralen Befugnisnormen für die Erhebung (§179) sowie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180), sondern enthalten weitere Bestimmungen über die Zweckbindung bei übermittelten personenbezogenen Daten (§181), den Schutz besonders sensibler Daten (§182), den Schutz der in Akten und Dateien gespeicherten Daten (§183), die 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184), die Auskunft und Akteneinsicht an den Betroffenen (§185) und für wissenschaftliche Zwecke (§186) sowie über die ergänzende Anwendung einzelner Vorschriften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187).

Die Frage, ob es dem Gesetzgeber mit solchen Regelungen gelungen ist, den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denen das BVerfG Ausdruck gegeben hat, gerecht zu werden, ist aufgrund verschiedener Generalklauseln sowie der Regelungen der Offenbarungspflicht für Therapeuten durch §182 Abs. II noch keineswegs abschließend geklärt. So zeigt der Überblick über die Regelung des

---

\* Professor, College of Law, Dankook University

Datenschutzes im Strafvollzug, dass hier die Ausnahme die Regel ist. Auch wer im Ergebnis die spätere Kodifizierung der Materie begrüßt, wird an der Dürftigkeit des hier gebotenen Datenschutzes kaum vorbeargumentieren können.

Mit der bereichsspezifischen Datenschutzregelung in §§179 ff. StrVollG hat der Gesetzgeber eine kontrovers diskutierte Entscheidung getroffen. Das Gesetz bietet der Vollzugsbehörde nahezu unbegrenzte Möglichkeiten, persönliche Informationen über ihre Klientel zu erhalten. Die Praxis muss zeigen, ob die Beteiligten zu verantwortungsvollem und verfassungsorientiertem Umgang mit der neuen Regelung in der Lage sind.

- ❖ Key words: Besonderheiten des Datenschutzes im Bereich des Strafvollzugs, bereichsspezifische Rechtsgrundlagen, Zweckbindung, sensible Daten, Auskunfts- und Akteneinsichtsrecht